



2025년 사회적경제조직 판로지원 2차 공고

2025. 05.

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

2025년 「사회적경제조직 판로지원」 2차 공고

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지원 및 매출 증대를 위해 2025년 「사회적경제조직 온라인 판로지원」 사업에 참여할 도내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
2025. 5월

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

1 사업개요

- (사업명) 2025년 경기도 「사회적경제조직 온라인 판로지원」
- (사업기간) 계약 완료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
- (사업대상) 경기도내 *사회적경제제품 생산기업, 공정무역기업
*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, 자활기업 등(예비 포함)

지원내용

- 경기도 사회적경제 쇼핑몰 ‘공삼일샵(031#)’ 온라인 스토어 입점 및 판로지원
 - 월별 리뷰 이벤트 및 프로모션 통한 판촉 지원
 - 입점 수수료

구분	채널 주문관리 수수료	판매 수수료	계
자사몰 수수료 (네이버 스마트스토어)	3.63%	3%	6.63%

- 공삼일샵 쇼핑몰 외부광고
- 온라인 유통채널(11번가, 오아시스마켓, 우체국쇼핑몰) 연계 기획전 지원
- 지역(제주도) 연계 판촉행사 추진
 - 경기x제주 카테고리 생성 및 기획전 추진
 - 경기x제주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업 및 네트워킹데이 개최(제주도와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)

입점공간	
공삼일샵 링크 (네이버 스마트스토어)	https://smartstore.naver.com/segg
이미지	

2 모집계획

□ 기간 및 대상

- (지원기간) 계약 완료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
- (모집규모) 제한없음
- (신청자격)
 - 경기도 소재 공장이 있거나 주사무소(주소)를 두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및 공정무역 기업
 -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정책에 따라 위탁판매가 가능한 품목(서비스·체험 품목 가능)
 - ※ 세부내용 4P <모집 대상 상품> 참고
- (지원대상) 2025년 경기도 내 *사회적경제제품 생산기업, * * 공정무역기업
 - * 사회적경제제품 생산기업
 - 「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3호에 해당하는 기업(조직)
 - ※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, 자활기업 등(예비 포함)
 - **공정무역기업(「온라인 판로지원」 사업만 지원 가능)
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
 - ※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 범위
 - ① WFTO(세계공정무역기구) 가입 기업이 취급하는 생산물
 - ② FI(국제공정무역기구) 인증 생산물
 - ③ 공정무역협의회 소속 회원이 취급하는 생산물

○ 모집 대상 상품

지원가능 상품	지원제외 상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(기획·제조) 제품 - 도내 중소기업이 설립한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-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다른 업체에 위탁생산(OEM)한 제품 -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(OEM)한 제품 - 자사제품과 타사브랜드가 협업(콜라보레이션)하여 기획된 한정 제품 - 도내 농업인 또는 농업사회법인,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의 제품 - 도내 중소기업이 산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한 제품 (도외재배 시,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만 지원 대상) - 최종소비재(부품소재 및 중간소재 제외) 및 가공식품만 신청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순 유통제품 - 의약품, 기업형 의료기기, 산업재, 원부자재류, 부품소프트웨어 등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 불가능한 제품 -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보호, 상표, 저작권 등 법적 분쟁이 있는 제품 - 다른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 - 시장에서 바로 유통이 어려운 제품 - 상품 보관상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- 공급사 및 제조사를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제품 - 해외직구 및 병행수입을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제품 - 부피가 큰 제품, 전자기기, 고가제품 신청 불가 - 주류

3 사업 진행절차 및 심사 내용

□ 진행절차



□ 심사

- (1차 심사) 서류 심사(상품기술서, 인증서 등 서류를 통한 적격 심사)
- (2차 심사) 법 위반 사실 조회
 - 평가항목

평가항목	세부항목
기업 지원 적격 (30)	지원대상 기업 여부 * 4P 지원대상 참조
제품 지원 적격 (70)	지원가능 제품 여부 * 4P 모집대상상품 참조
총점(100)	법 위반 사실 확인 시 총점의 20% 감점 적용

□ 기타사항

- 서류 누락 방지를 위해 신청 시, 첨부한 서류를 메일(kte817@kgcbrand.com)로 추가 접수 필수 ※메일만 발송 시 접수되지 않음
- 공고문 미숙지 및 불이행, 연락불통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
- 예외를 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심사 결과는 개별 통지 예정
- 선정된 사업계획은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음
- 허위 사실 기재 및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자동 선정 취소

□ 유의사항


- 불법/부당한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(공모일 기준 2년 이내)
- 민원 야기, 임금체불, 환경오염, 불법공장, 세금체납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(공모일 기준 2년 이내)
- 정부,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 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(공모일 기준 2년 이내)
- ※ 위 참여 제한 기업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 기재, 증빙 불가, 결격 사유 등이 발견된 경우,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

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□ 지원신청

- (신청기간) 공고일부터 2025년 6월 15일(일)까지
- (접수방법)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접수만 가능
 -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(www.kgcbrand.com) 사업공고에서 신청 및 지원서류 첨부
 - ①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(www.kgcbrand.com) 회원가입 및 로그인
 - ② 알림소식-사업공고-경기도 '2025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사업' 지원기업 모집 공고 선택
 - ③ 사업참여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확인
 - ④ 신청정보 입력 및 자료 업로드 : 업체 정보 및 필수/선택 제출 자료
 - ⑤ 공급 제품 정보 입력 후 최종 신청 완료

□ 제출서류

구분	제출 서류	제출 서류 유의사항
필수	[첨부서류] 사업자등록증명원 (또는 공장등록증명원)	* 원본대조필, 25년 3월 이후 발급 서류
	[첨부서류] 국세, 지방세 납부 확인서	* 제출일 기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
	[첨부서류] 사회적경제조직 인증 및 확인서 등 증빙서류	* 서류 제출시에만 지원 가능 * 인증서류 내 유효기간 만료 시 지원 불가
	 <p>사업자등록증 (국세)납세증명서 지방세납부확인서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인가증 마을기업지정서 자활기업인정서</p>	
선택	[서식1] 이의 및 구제 신청서	* 법 위반 해당 기업의 경우 이의 및 구제 신청 시에만 제출 * 회사소개서 및 기타자료에 업로드
	회사소개서 및 기타자료	* 회사 및 상품 관련 자료 첨부 시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

⇒ 파일 업로드 시, 1개의 파일만 가능하며, 2개 이상인 경우 1개의 PDF로 합병하여 제출

⇒ 서류 누락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신청 후, 첨부한 서류를 메일 추가 접수 필수(kte817@kgcbrand.com) ★
/ 메일제목 : '공삼일샵 2차 공고 접수(기업명)' / 메일만 발송 시 접수되지 않음

5 사업참여 유의사항

1 「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준수

○ 조례 제6조에 따라, 법위반 사실 확인 시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

- ① 조례 제2조제1호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관련 11개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
가. (공정) ① 공정거래법, ② 하도급법, ③ 표시광고법
나. (노동) ④ 근로기준법, ⑤ 산업안전보건법
다. (환경) ⑥ 폐기물관리법, ⑦ 대기환경보전법, ⑧ 소음진동관리법, ⑨ 물환경보전법
라. (납세) ⑩ 국세기본법, ⑪ 지방세기본법

② 위반사실 조회기간 : 사업 공모일(모집일) 기준 2년 이내

- 가.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, 과징금, 과태료
나.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, 고발건은 사실 확인시 제한기준 적용

③ 사업참여 제한조건(변경)

(기존) 법위반 사실 확인시(1회이상) 공모사업 참여자격 제한

(변경) 법위반 사실 확인시(1회이상)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

- 가.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(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(서식2) 내용과 상이) 사업 취소·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
나. 사업자 선정후 신규 법위반시 사업부서별(사업별) 법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

④ 법위반사실 확인(변경)

(기존) 기업이 법위반 행정 처분기관에서 발급한 사실 확인서 제출

(변경) 사업부서에서 기업의 법위반사실 확인

- 가. (공정)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(법위반조회발급/법위반사실조회)
나. (노동)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
다. (환경) 기업 소재지 관할 시·군
라. (납세)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

⑤ 이의 및 구제신청(변경) :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[서식2] 제출

(기존)

- 가. 사업자선정위원회(실국 또는 수탁기관)에서는 사업자 선정전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후 (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)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
나. 법위반 사실 조회기간 내 2회 이상 법위반시 소명기회 제외

(변경)

- 가. 사업자선정위원회 등(실국 또는 수탁기관)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 신청서 검토 후(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)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(기업의 권리구제,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정기한 연장 가능)

나. 삭제

⑥ 제출서류 :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, 기업의 범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

② 공정한 [공모 - 심사 - 선정] 추진

○ 공개모집 및 적격검토와 범위반 여부 검토를 통한 공정한 지원기업 선정

③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경기도 사무위탁조례」, 「경기도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」, 「경기도 범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, 협약서 등 관련 규정 준수하여 추진

담당자 및 문의처

☞ 담당자 : 경기도주식회사 유통사업실 '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' 담당자

☞ 문의

(☎ 031-5171-5337, ✉ kte817@kgcbrand.com)